2026년 단체협약 회의록

HYUNDAI WIA

제 7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집행부 이취임식은 전조합원 2시간을 부여한다.

제 10조【조합원 교육시간】

1. 조합이 정한 교육시행일에 생산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한다.
2. 창원 外 지역 교육시행 방법은 노사 간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한다.

제 12조【조합 전임자 및 처우】

= ③항 관련 = 조합원의 경우 전임여부는 별도 노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9조【우리사주 조합】

우리사주 조합과 관련한 제반사항 (회의체 등 시간 부여) 필요 時 노사협의토록 한다.

제 22조【장기근속 포상】

1. 20년 장기근속자 포상과 정년퇴직자 포상이 중복될 시 정년퇴직자 포상만 실시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년포상여행 未참여자는 여행상품비로 지급한다. 여행관련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 논의한다.
3. 장기근속 기념품(금)은, 현물(금) 또는 현금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 장기근속 퇴직자 포상

근 속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격려금	250만	350만	500만

제 23조【위안회】

1. 정년퇴직자 위안회 時 공로패를 증정한다.
2. 회사는 정년퇴직 예정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은퇴대비 및 재충전 시간 부여 등을 위한 위로휴가 (10일, 퇴직예정 당해년 1년간 분할사용)를 부여한다.
3. 회사는 현재 시행 중인 정년퇴직여행 관련 여행지 다변화 등을 통해 만족도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4. 정밀건강검진은 본인 및 가족 1인(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및 건강보험에 등재된 자)에 한하며, 검진 비용은 100만원/人 한도로 시행한다.

제 24조【정년】

1. 정년퇴직자 처우조건

구 분		내 용	비 고
임금관련	기본급	59세 기본급대비 90%	
	근속수당	개인별 근속 적용	~ 191,000원

구 분		내 용	비 고
근속관련	근속	근속 인정	
	연차휴가	근속 인정	
휴직관련	신상, 상병 등	단협 적용	
복리후생	차량구입지원	근속 인정	
	경조금	근속 인정	
	장기근속포상	적용(근속 인정)	
기 타	조합원인정	조합원	
	보직(직책)	적용	선, 해임에 따라 결정

2. 정년퇴직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단계 과정은 만59세에 2일, 2단계 과정은 만60세에 2일을 시행하고 단계별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을 보강한다.

제 25조【휴직사유 및 기간】

중증질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한다.

제 37조【임금지급 원칙】

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 및 개별기본급, 성과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44조【퇴직금】

정년퇴직 시 퇴직금은 만59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과 만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 기준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만59세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만59세, 만60세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만60세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 만60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만59세, 만60세 연말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그 이전의 3개월보다 적을시 그 이전의 것으로 적용한다.

제 47조【휴게시간】

1. 주간연속2교대 미시행자의 경우 혹서기(7/1~8/31)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5분 (야간근무자 20분)으로 한다.
2. 주간연속2교대 미시행 야간 근무자는 매 2시간 마다 15분의 휴게시간을 주며, 야간 근무자의 4시간 연장근무시 휴게시간은 07:30~08:00까지로 한다.
3. 회사는 직원들의 사기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현장의 완벽 품질 기반조성을 위해 `19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냉방시스템을 설치하되, 전력수급방안, 냉방설비 설치 공간, 단열 가능 건물구조 등 환경적 여건 및 공사로 인한 생산영향 등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2년 내 설치하되, 세부적인 진행절차는 기존 혹서기 대책 TFT에서 논의한다.

제 48조【휴일】

1. 정휴일 관련 법(규정) 개정 시 노사협의 한다.
2. 1항 4호의 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변동 시 그에 따른다.
3. 중복휴일 익일휴무 중 2일(`20년 삼일절, `21년 광복절), 체육대회 익일휴무에 대하여는 정상 근무토록 한다.
4. 주간연속2교대 미시행자의 경우 신정전일 야간근무자는 유급휴무로 하며 별도회의록 상기 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제48조 제1항 제3호 변경 규정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제 49조【월차, 년차 휴가】

미 사용분 월차, 년차 수당은 익년 1월 10일까지 본인 희망계좌로 지급한다.

제 53조【공 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등에 의해 확인된 천재지변 및 유행병 발생으로 출근이 불가한 경우 별도 협의한다.

제 58조【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활동보장】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활동보장과 관련한 산보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제 61조【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된 안전보건교육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책임·지도 한다.

제 62조【안전보호장구】

1. 안전화는 8개월에 1켤레 지급한다.
   단, 공무(기계, 전기), 용접, 도장, 열처리, 주조, 영선 작업자는 6개월에 1켤레 지급한다.
2. 교체기간內 훼손 등으로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경우 1:1 교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6조【생계 보조】

1. “비급여 요양비”와 관련해서는 단체교섭 종료 後 산보위 실무회의 (노사협력팀 참석)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2. 산보위 실무회의는 노사 각 3~4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월 1회 개최토록 한다.

제 75조【복지후생】

회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기념품을 지급하며, 첫째 50만, 둘째 100만, 셋째 이상 150만 바우처를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시 자동 소멸한다.

제 78조【장학제도】

1. 외국 중, 고교 및 대학 유학의 경우 종업원 평균금액을 지원한다.
2. 전액 장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정액으로 200만원의 학업성취 장려금을 지급한다.
3. 3째 대학생 자녀의 경우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재학 중 총 8학기 한도(5년제 10학기, 6년제 12학기)로 지급 한다.
4. 회사는 자녀가 초등학교 첫 입학하는 경우 첫째 50만, 둘째 100만, 셋째 이상 150만 바우처를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시 자동 소멸한다.

제 79조【의료비 지원】

1. 배우자는 건강보험증 등재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킨다.
2. 난임 시술비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3. 회사는 직원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관리 및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구 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후유장해	암 진단비
보장 내용	1억원	1억원	1억원	5천만원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 : 1천만원 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 3백만원

제 84조【체육대회】

1. 1회/年 체육대회는 노사협의에 따라 반 · 부서 · 본부 · 회사 전체로 할 수 있다.
2. 주간연속 2교대 미시행자의 경우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유급휴일은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86조【차량구입 지원금】

1. 현대·기아 차종 중 승용차 및 12인승 승합차에 한한다.
2. 지원율은 옵션포함 순수차량가격 기준으로 한다.
3. 차량구입지원금 관련 소득세 정산은 희망자에 한하여 지급일 당시 공제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합산해서 분할 공제 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세금정산 부담을 경감한다.

▶ 입사 후 최초구입 차량구입지원금 적용 관련

입사 후 최초 구입 차량에 대해 지원율 20% 적용한다. 단, 차량 재구입 제한 및 의무보유기간은 4년으로 하며, 기타 지원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속 만1년 이하, 촉탁계약직 제외)

▶ 전기차 차량구입지원금 적용 관련

1.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들의 전기차 구입시, 차량구입지원금+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차량가격의 21%까지 적용한다. (차량구입지원금 최대 15% 적용, 그룹사 할인율 5% 미포함)
2. 차량구입지원금은 신차출시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토록 한다.
3. 기타 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전기차 차량구입지원금 적용 관련 별도 회의록)

노사는 2022년 단체교섭시 노사간 합의한 전기차 차량구입지원금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넥쏘(수소전기차) 및 제네시스(G80, GV80)급 이상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적용 차종 확대는 추후 재논의 한다.

제 87조【휴가비 및 귀향비】

휴가비 및 귀향비는 휴가일 5일전 지급한다.

2026. 11. 18.